

#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3. 27.

제안자 : 정상혁의원 외

## □ 수정 이유

- 조례안 문구중 표현방식에 있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불합리하여 자칫 오해나 착오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바로 잡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위원장은 충청북도경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p> <p>1.-2. (생략)</p> <p><b>3.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u></b></p> <p>4.-6.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 ----- -- -----</p> <p>1.-2. (제정안과 같음)</p> <p><b>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b></p> <p>4.-6.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정안과 같음)</p>

#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감독대상공사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충청북도경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분임경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영 제25조제4호카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경리관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부의 받은 때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반영)**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이하 “감독”이라한다)의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공사로 하되,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제13조(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이하 “여비조례”라 한다)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공무원 5급상당)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현 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關係法令(拔萃)

## [계약심의위원회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법률 제7672호)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9239호)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 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 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 3호 생략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차목 생략

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민참여감독제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법률 제7672호)

제16조(감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 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감독범위·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9239호)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법 제16조 제2항에서 “주민대표자” 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를 관할하는 통·리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통·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또는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